

 	보 도 참 고 자 료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(02-2100-2530)	담 당 자	성보경 사무관 서승리 사무관 (02-2100-2536)
	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김 용 태(02-3145-7120)		김익남 P2P감독팀장 (02-3145-7135)

제 목 :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합니다.

- ◆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6.1일(월)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(이하 'P2P금융업')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계획
 - 금융당국은 P2P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 · 응답을 진행할 예정
 - 등록설명회는 참가 신청을 통해 참석 가능[이메일로 참가 신청 접수*]
- * p2p@fss.or.kr로 성명, 소속, 휴대폰 연락처 송부

1 설명회 개요

- (배경) 금융위·금감원은 P2P금융업법 시행(20.8.27.)을 앞두고 P2P 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
- (일시) '20.6.1(월) (1회차) 14:00 ~ 15:00, (2회차) 15:30 ~ 16:30
- * (1회차)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기신청한 회사
(2회차)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
- (장소)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(서울시 중구 소재)
- (신청방법) 2회차 설명회 참석희망자는 '20.5.28(목)까지 성명, 소속 (회사명 등), 휴대폰 연락처를 p2p@fss.or.kr로 송부

※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의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차별 참석인원은 100명으로 제한 (업체당 1명 참석가능하며 신청자 100명 초과시 접수순 선정, 미신청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음)

「P2P금융업 등록설명회」개요

- **(금융위·금감원)** P2P금융업법 상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등록요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
- **(P2P협회 추진단)** P2P협회의 역할, 자율규제체계 및 가입방법 소개 등

시 간		주요 내용	발표자
1회차	2회차		
14:00 ~ 14:05	-	인사말 및 설명회 소개	윤병원 금융혁신과장
-	15:30 ~ 15:35		김용태 핀테크혁신실장
14:05 ~ 14:30	15:35 ~ 16:00	등록 요건 및 절차 안내	금감원
14:30 ~ 14:50	16:00 ~ 16:20	질의·응답	금융위·금감원
14:50 ~ 15:00	16:20 ~ 16:30	P2P협회 소개	P2P협회 추진단

3 향후 계획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('20.8.27)에 차질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령등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등록심사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 가능
 - * 기존에 대부업법 등록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'21.8.26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한편, 금감원은 '20.4월 중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금융업으로의 등록전환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
 - 설문조사 결과*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계획

* "(붙임)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업 전환등록 설문조사 실시 결과" 참고

< 연계대부업자 대상 P2P금융업 전환 등록 설문조사 개요 >

- 조사대상 : '20.4월 현재 연계대부업자로 등록된 243개사
- 회신업체수 : 138개사(전체 회사의 56.8%)
- 조사방법 : 금융감독원-금융회사간 연계 전산망, 이메일, 전화 등을 통해 설문조사 양식을 전달하고 답변을 취합
- 조사기준일 : '20.4월
- 조사항목 : P2P금융업 등록희망 여부, 등록신청 일정 등

※ 동 설문조사 결과는 회사가 제출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으로 실제 P2P등록 업체 수 및 일정은 등록절차 진행과정을 거친 후 추후 변동가능

1 (등록희망 여부) 전체 연계대부업자(243개사) 중 46.5%에 해당하는 113개사가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변

P2P금융업 등록희망 여부에 대한 답변

구 분	회신			미회신	합 계
	등록희망	등록미희망	미응답		
회사수	113 (46.5%)	17 (7.0%)	8 (3.3%)	105 (43.2%)	243 (100%)

2 (등록신청 일정) 등록희망 업체(113개사) 중 13개사(11.5%)가 법 시행 직후 등록을 신청할 예정으로 답변하였으며, 42개사(37.2%)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변

- 법 시행 후 3~6개월('21.2월) 이내에 등록 신청 예정이라고 답변한 회사가 23개사이고, 6~9개월('21.5월) 이내 16개사, 9~12개월('21.8.26일) 이내 19개사

P2P금융업 등록신청 희망 시기

구분	법 시행 직후	'20.8.27~ '20.11월중	'20.12월~ '21.2월중	'21.3월~ '21.5월중	'21.6월~ '21.8.26.중	합계
회사수	13 (11.5%)	42 (37.2%)	23 (20.4%)	16 (14.2%)	19 (16.7%)	113 (100%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